

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039
------	------

2016. 3. 3.  
기획경제위원회

## I 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년 2월 23일, 신건택의원의 18명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24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】

-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2016. 3. 3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## II . 제안설명의 요지(신건택 의원)

- 지나치게 엄격한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거주 요건을 완화해 시정 기여도가 인정되는 다양한 인사에 대한 명예시민 위촉을 활성화하고, 일반시민 추천 조건 강화로 후보자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등 명예시민증 수여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거주요건을 완화해 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한 명예시민 위촉을 활성화하는 등 명예시민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명예시민증 수여제도 운영 현황

- 서울시(이하 “시”)는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외국인이나 방문 외빈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의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.
-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선정은 후보자 추천공고와 추천,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, 시의회의 동의 과정을 통해 엄격히 진행되며,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을 막고 명예시민증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음.
- 시는 1958년 관련 제도<sup>1)</sup>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92개국 740명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며, 최근에는 2014년

---

1) 1958년 공로시민증 제도로 시행되었으며, 1972년 근거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와 같은 명예시민증 제도로 정비되어 운영되고 있음.

21명, 2015년 25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음.

- 시는 특히, 여러 차례 제기된 명예시민 사후관리와 관련해 시 주요시설(서울역사박물관, 서울대공원, 시립미술관 등) 무료입장 혜택 외에 명예시민의 날(10.28)초청, e-뉴스레터 발송을 통한 홍보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정 연계강화를 위해 연락이 닿는 232명의 명예시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연락과 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.
- 이 밖에도 시는 외국인 방문이 높은 일부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할인 혹은 무료입장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명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음.

#### 다. 명예시민 거주 요건의 완화(안 제2조)

- 현재 시는 3년이상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가운데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음.
- 안 제2조제2항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거주요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해 일반적인 거주요건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완화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- 실제 현재 시의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의 거주요건 기준은 「국적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귀화요건<sup>2)</sup>과 유사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, 객관적으로 시정 기여도가 인정되는 다수의 경우에 명예시민증 수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.
- 명예시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혜택의 확대와 지속적인 관리와 같은 질적인 개선외에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선정해 명예시민의 수를 늘려가는 양적확대도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거주요건 완화의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,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명예시민증의 권위나 희소성에도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선정심사위원회를 비롯한 선정 절차를 통해서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것임.

#### 라. 일반 시민 추천 조건의 강화(안 제3조)

- 안 제3조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후보자 추천 조건 가운데 일반 시민의 추천요건을 기존 1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함.

---

2) 「국적법」 제5조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,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계속하여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도록 하고 있음.

- 이는 일반 시민 추천의 조건을 강화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대상자 추천 가능성을 사전에 제한해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과 선정과정의 공신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- 다만,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로 추천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일반시민에 의한 추천보다는 공공단체 혹은 사회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제 일반 시민 추천 조건의 강화가 명예시민증 자체의 권위나 공신력 회복으로 직접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#### 마. 종합의견

- 시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이를 격려하고 서울 홍보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, 거주요건의 완화와 일반시민 추천제도의 강화와 같은 조치는 명예시민증 자체의 권위와 선정절차에 대한 공신력을 회복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.
- 다만,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혜택의 지속적인 확대와 협력·유대강화를 비롯한 적극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병행해 명예시민제도의 양적·질적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#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수여대상)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(이하 “명예시민증“이라 한다)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
1.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(이하 “시정“이라 한다)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

2.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

②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3조(후보자 추천) 공공단체의 장,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2조(수여대상)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(이하 “명예시민증“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(이하 “시정“이라 한다)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.</p> <p>②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.</p> <p>제3조(후보자 추천) 공공단체의 장,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수여대상)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(이하 “명예시민증“이라 한다)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(이하 “시정“이라 한다)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</p> <p>2.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</p> <p>②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“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.</p> <p>제3조(후보자 추천) 공공단체의 장,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</p>